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사례

-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

한국전기제품안전진흥원 이사 나경수

02) 579-3291 ksrha@esak.or.kr

1. 머리말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에서 제조물책임(PL)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30여 개국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와의 교역 상대국은 거의 모두가 이 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제도는 각 나라마다 그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화된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바람직하게는 앞으로 PL법의 통일적인 적용문제만 남아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누적된 판례의 진전과 그 추적에 의하여 형성되어 발전되어 왔다. 결함있는 제조물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의 추이는 과실책임을 시발로 해서 보증책임을 거쳐 엄격책임으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우리가 현재 제조물책임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엄격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으로 미국에서 1963년에 캘리포니아주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채택한 역사적인 원칙이다.

그 후 미국에서 엄격책임이 일반적으로 채택되면서, 그 결과로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크고 작은 소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청구금액에 관계없는 소송제기비용, 허다한 변호사의 존재, 패소할 경우에도 원고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이른바 변호사 성공보수제도, 일반시민 가운데에서 무작위로 선임된 배심원이 책임의 유무와 배상액을 인정하는 미국 특유의 배심원제도, 실제로 피해 입은 손해

액 이상의 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미국 PL법이 현재까지의 특수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반대중의 국민생활과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를 중요시하는 관념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각종 규제 완화 따른 제조자와 소비자 쌍방의 자기책임원칙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세차게 제기되었다. 또한 제조물의 수입이 대폭적으로 증가일로에 있었고, EC지침에 따른 유럽 각 국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이 다투어 제정되는 과도기에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조물책임의 입법을 우리나라에서도 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되었고, 만시지탄이 있지만 제조물책임법은 1994년에 드디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PL법은 정당·학계·법조계·산업계·소비자단체·노동계 등의 감론을박과 폭넓은 논의를 거쳐서, 그리고 PL법이 시행되고 있는 다른 나라의 그것들을 본(本)을 따서 관련 정부부서와 일체가 되어 비교적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

2.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특성

불문법(不文法)이란 문서의 형식을 취하고 정구의 제정절차를 거친 이른바 성문법(成文法)이외의 모든 법을 말한다. 관습법이 대표적이고 판례법이나 조리(條理)도 이에 속한다. 독일과 프랑스 등 대륙법계에서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고, 영미법계에서는 대개의 경우

불문법이 법체계의 중심이 되고 있다.

미국의 제조물책임(PL)법은 이러한 불문법계통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그것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여곡절 끝에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의 역사도 꽤 오래되어 장장 1962년으로 소급되는데, 실제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1970년대 초반부터라고 알려져 있다.

여하튼 불문법은 글자로 표현되어 있지 않고 또 조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관례상 인정되는 법인데, 판례의 누적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법리는 소비자의 권익을 철저히 그리고 최대한으로 옹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조물책임법리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자에게는 과다한 보상책임을 부과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여타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도 확인할 수도 없는 몇가지의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히 배상에서 그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예상밖의 소송(Frivolous Suits)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동양권의 나라들 특히 유교문화권적 풍토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법정 소송이 일반화되어 있다. 통상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사소한 분쟁까지도 법정에서 잡다한 소송으로 이어져 해결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의 주된 원인으로는 변호사에 대한 성

공보수계의 정착, 저렴한 소송비용, 대다수 국민의 법치주의 관습과 이로 인한 소송만능주의 등 미국의 특수한 소송제도의 사회적 토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소한 소송은 재판의 건수를 늘리고 소송비용이 증가하고 또 소송상 소요되는 시간을 연장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이러한 종류의 소송을 자제하고 될 수 있는 한 제한하고자 하는 의회와 주(州) 정부의 움직임이 있다.

둘째 연대책임과 이와 관련된 디프포켓이론(Deep Pocket Theory)이다. 연대(連帶)란 어떠한 행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대책임이란 2인 이상의 가해자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해 손해를 본 피해자가 양쪽 혹은 가해자 사이의 책임정도와는 무관하게 어느 한쪽의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금 전체도 회수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법리에 의하면 1%의 책임이 있는 갑(甲)과 99%의 책임이 있는 을(乙)이 공동가해자인 경우, 을에게서는 충분한 배상능력이 없고 갑에게는 충분한 배상여력이 있다면 갑은 책임분담 비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100%의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후에 갑은 을에 대한 구상권을 획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책임분담 비율에 비해 과다한 부담을 지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것은 어느면에서는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러한 연대책임법리는 특히 교통사고나 사업장에서 의 산업재해사고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의 경우일수록 위험의 분산이 가능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통해 다시 이윤창출을 쉽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머니가 두둑한(Deep Pocket) 대기업에

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사회적인 행위의 견지에서 타당하다는 이유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금력이 든든한 대기업은 간혹 전혀 책임이 없는데도 연루가 되어 소송의 피고가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액의 엄청난 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일면 억울한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다.

셋째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인데, 앞날을 경계한다는 뜻으로 벌을 준다는 의미로서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응징한다는 취지로 주는 벌이다. 그래서 여기서 징벌적 배상이란 가해자에게 안전의무의 고의적 태만이나 증거 은닉과 같은 약의가 있는 경우에 제발방지를 위한 사회 고발적인 훈육효과를 얻기 위해 도입된 법리였다고 한다.

그래서 최초에는 전보적(填補的) 배상금액의 2배 배상(Double Damages) 또는 많아야 3배 배상(Triple Damages)이 인정되었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실제로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評決 : Verdict)이 나오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공소심에서 역전이 되거나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는 하지만 징벌적 배상금액은 기업의 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또 이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기업이 도산으로 밀바닥으로 전락하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송증가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한 이러한 관계로 기업체에서는 PL예방의 많은 부분이 이 징벌적 배상책임을 위협을 최대한으로 회피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정기적 배상(Structured Settlements)인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이다. 배상금액이 너무 높고 특히 징벌적 배상금을 내야하는 경우에

는 PL보험에서도 이것을 커버할 수 없으므로 제조사의 자력에 의한 오직 현찰(cash)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체에서는 지불하고 싶어도 시제가 부족하여 일시에 지불하지 못해 허덕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배상금은 전액을 한꺼번에 갖는 것이 통례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몇 회에 나누어 지불하는 할부지불(installments)도 허용해 주고 있다. 그리하여 피고의 사정에 따라 요청이 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어느 시기까지 지불완료하는 형태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길을 터 놓았다.

다섯째 집단소송(集團訴訟 : class action)인데 많은 사람이 어떤 행위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중 일부의 피해자나 전체피해자를 대표하여 제기(提起)하는 소송으로, 일명 집합대표(集合代表)소송이라고도 한다.

주로 공해, 결함상품, 가격의 위법적 인상 등에 의해 피해를 받은 다수인이 집단으로 손해배상이나 유지(留止)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노동쟁의에서 대량의 처분자, 이틀터면 집단해고 등이 나온 경우에도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법률상의 호칭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민사소송법상 다수인이 원고가 되는 공동소유의 대규모적인 것이다. 또는, 다수인 중에서 적당한 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전원을 위해 소송을 시키는 이른바 선정당사자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이들터면, 미국의 실리콘젤 부작용 소송사건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이다. 유방확대수술 후 가슴에 주입되어 있었던 주머니가 터져서 체내에 누출된 실리콘 연역체계 파괴와 피부조직의 이상을 일으키는 피해가 여기저기서 속출하였다. 이로 인해 각지에서부터 사고정보나 소비자의 고충이 미국식품의약국(FDA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도 제기되었고 급기야는 1992년에 FDA는 그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같은해에 다우코닝사는 제조를 중지하였다. 피해자들은 각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각지에서 제기하였고 일부에서는 거액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다. 그 후 무려 약 1만 2000여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알라바마주 버밍햄의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집단소송에서는 피고 중 다우코닝사, 브리스틀 마이어사 및 배스터 헬스케어사의 3사가 공동으로 총액 40억달러의 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조건으로 전세계 화해안(global settlement)을 마련하였다. 이 전세계 화해안은 몇번의 수정과정을 거친 후 확정되었다. 피해자들 중 이 화해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소송을 진행시킬수 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화해안을 받아들였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PL소송의 남발, 상상을 초월하는 고액의 징벌적 배상금액, 수없이 많은 사소한 예상밖의 자디잔 소송사건들, 고액에 대한 정기적 분할배상, 집단소송 등 여타국가에서는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성격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법리의 적용은 미국내에서 특정한 산업이 무리하게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한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사회여건을 형성하여 반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체계를 너무 일방적으로 소비자과잉보호라는 중심에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강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미국의 특성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특수법리가 그나

마 그런데로 정착된 것은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꽃피었고 모든 사회 구성구석에 합리주의적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깔려있는 정돈된 사회분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의 질서와 안정이 정착된데다가 초현대적인 유통체계의 확립, 바람직한 법관의 자질형성 등이 작용하여 소비자천국을 일구어낸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사회성이 정착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민초중심의 지상낙원을 만든 것도 큰 요인이 되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모든 일이 동전에는 양면이 있듯이, 제조물책임에 의한 강화된 컨슈머리즘(consumerism)이라는 측면이외에 기업활동의 위축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어 최근에는 주(州)별로 다양한 보완장치를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쨌든 미국은 우리에게 최대의 수출시장으로 국내의 제조업체들이 미국내에서의 PL소송을 통해 막대한 배상손실을 초래하여 그동안 값비싼 경험을 맛본 바 있다. 그뿐만아니라 여타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한 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별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국의 제조물책임법리를 근간으로 하여 자국의 법체계를 변경하고 개정하며 보완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우리도 향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국내의 추이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일본 PL법의 특징

제조물책임(PL)법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해 왔으며, 현재 전세계적으로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서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각 국가별 법

의 체계, 사회구조와 문화적 분위기 등의 시행여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의 상이점이 있으며 다양한 적용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제일먼저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각종 제조물책임법리가 비교적 발달된 미국과는 상대적으로, 같은 유교문화권으로 우리나라와는 이웃에 있으면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우리와 적용상의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1994년 4월 12일에 제정되어, 이듬해인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준비성있는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전부터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피해사고 예방에서부터 피해구제 및 각종 제품의 안전대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각종 제도나 체계를 보완해 왔다. 그리고 여기에 미국과는 다른 사회제도와 문화적 토양 그리고 법체제로 인해, 법 시행후 급격하게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95년 법시행후 현재까지 꾸준히 소송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과 같은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만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배상금액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일단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외면하기 때문에 시장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계속기업으로서의 이미지의 실추는 물론 그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홀한 대처는 기업경영에 결정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조물책임의 위협과 유사한 위협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제조물책임법은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므로 일본의 사례

와 추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은 그런데로 몇 가지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분쟁의 해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화해를 통한 제조물책임 분쟁의 해결방식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 시행이후 2001년 상반기까지의 제조물책임관련 소송건수는 약 160건 정도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고처리가 조용히 처리하려는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화해와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물책임법의 본격 시행이전에 일본은 행정주도형 분쟁조정기관(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Facilities) 및 민간주도형 분쟁조정기관이 이미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민간기관의 증대로 인한 상당수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고들이 시끄러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조용히 해결된 것이다. 행정주도형 분쟁조정기관이란 고충처리와 피해구제 위원회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총리실에 해당하는 내각부 산하의 국민생활센터 및 각 지방의 450여 개 소나 되는 생활센터에 법제, 학제, 업계, 시험검사기관, 소비자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 및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민간주도형은 PL 상담센터나 심사조정위원회 형태로 되어있으며, 가전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업종별로 구성된 단체나 협회에 PL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자사변호사와 대기업에서 파견된 기술력을 상주시켜 피해신고내용의 상담과 화해의 알선을 우선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화해가 실패하게 되면 심사조정소위원회와 같은 비상설 전문위원회를 임시로 구성하여 분쟁조정활동을 수행한다. 그러나 심사조정소

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해 당사자들이 이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결국 법정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 일본의 특징은 역시 일본다운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일본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기 전에 이미 분쟁해결기관을 설치하는 동시에 제조물의 결함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소와 시험기관을 지정하여 이들의 유기적인 네트워크(network)를 구축하여 소송 및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리고 각종 홍보 활동과 제품안전성 및 내구성 향상을 위한 자금융자와 중소기업에 위한 일괄적인 PL 배상보험의 운영 등을 통해 기업들이 PL 법 시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각 기업체들도 제조물책임법 시행이전에 일본형 단계별 조직으로 PL 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내교육의 강화를 포함한 전사적인 PL 대응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PL 위원회는 제품의 설계, 생산 구매, 유통 등의 각 단계별 안전성검토(safety review)와 내구성 측정(endurability estimate)을 수행하고 제조물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설계되고 생산될 수 있도록 하여 법 시행이후 분쟁발생의 소지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제품안전과 사용수칙에 대한 인식은 법 도입후 크게 변화하여 PL센터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상담건수 및 소송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해당제품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이 시장에서 그 지위를 급격하게 상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들어 제조자는 물론 소비자의 의식은 상당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정부 및 기업체가 어느 정도 차원의 준비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 제조물책임법이 이상적으로 시행되었다. 물론 법 도입후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왔으나 큰 혼란없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소송결과를 볼 때 법 적용의 양상이 미국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비자의 강화된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기조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 그렇다고 향후 제조물책임에 관련된 법 체계 및 소송의 양상에 있어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낙관하기는 아마도 어렵게 될 것이다.

또한 국내 제조물책임법이 일본의 제조물책임법과 성격이나 형태에 있어서 매우 유사하게 논의되고 결정되었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따른 한국정부 및 기업체의 준비상황 역시 주로 일본을 모델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역시 미국의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검토하고 그 진행후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꼬리말

정부는 물론 기업이나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우리관념과 실정에 맞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기업은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정신에 따라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 진작에 힘써야 함은 물론이다. 항상 제품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또 소비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조물을 설계하고 제조해야 한다. 정성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막연히 제도의 시행에 대한 걱정이나 불만을 제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또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만드는 기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도 제조물책임법의 본래의 정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사고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용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항상 안전성을 확인하며 제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더라도 지나친 기대나 터무니없는 욕심을 품어서는 아니된다.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일에 소비자도 동참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사용자의 지나친 부주의와 턱없는 오용이나 남용까지 제조물책임법이 보장해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정부는 제조물책임법이 제대로 정착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됨은 물론 기업의 체질개선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타 보완제도의 정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제조물의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기타 법령을 정비하고 분쟁해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웃나라인 일본과 또 우리와는 교역이 많은 미국의 PL법의 특징을 살펴 본 것이다. 두 나라 공히 우리보다 선진국이며 우방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각 나라마다 그 나라 특유의 토양과 습속에 따라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 두 나라의 PL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며 분석하여야 하며 또 소화해서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우리의 PL법도 거기에 접목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